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 중지 및 산회 제한〉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62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 · 성일종 · 최수진 · 유상범 · 김민전 · 이만희
이인선 · 박준태 · 이달희 · 이철규 · 김석기 의원(11인)

2. 발 의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 의안번호 : 15162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

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의 실시 중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합의하지 않고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내용임(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u> <u>하고 제1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을</u> <u>실시하는 중에 의장은 각 교섭단</u> <u>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u> <u>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u> <u>수 없다.</u>

무제한토론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원이 시간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것으로,¹⁾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
에 소수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건의 합의 처리를 유도하려
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1)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현행법에 따른 의원의 발언시간 제한 및 의사정족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며, ①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②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어 24시간이 지난 후 의결된 경우, ③ 무제한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토론이 종결됨.²⁾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거나 회기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중지될 경우 토론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제한토론 중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더욱 엄격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다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더라도 발언시간 제한 등 현행법 제106조의2에 따라 명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외에는 발언 및 의사진행에 관한 일반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됨. 이에 의장은 회의 진행 중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회를 하거나,³⁾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

2)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를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3) 2020년 12월 제383회 국회(임시회)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실시 중, 참석의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어 방역 차원에서 정회한 후 16시간 뒤 속개하여 토론을 재개한 사례가 있음.

정될 때에는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는 질서유지권⁴⁾을 행사할 수 있음.⁵⁾

즉, 무제한토론의 실시 중에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거나 질서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제도의 독립성과 지속성 보장 및 원만한 회의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4)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p.525~526